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 성과 계약서

2008. 3.



마 포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제 1 장 총 칙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성과급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이사장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과 이사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년 8월 17일부터 2010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사장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이사장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며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법, 조례, 공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6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이사장은 공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기관(회사)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다만, 공단 이사회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공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 6 조(경영목표) 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이사장은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동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 ‘나’급이상을 목표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 7 조(경영실적 보고) ①이사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미비한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이사장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① 이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목표이행실적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행하며, 구청장은 경영실적 보고서 제출일부터 3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표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 목표치와 기준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목표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성과의 기준이 되는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9 조(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과) ①이사장의 경영성과(“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이사장평가 및 경영평가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목표이행실적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이사장이 재임한 경우의 인센티브성과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이사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 10 조(보수체계) 이사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부가급여(직책수행비, 가족수당),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기본연봉) ① 이사장의 임기 중 기본연봉액은 별표 1과 같으며 매월 12분의 1씩 공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연봉에는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다음연도 연봉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⑤ 이사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성과급) ① 이사장의 성과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이사장의 월 기본급(연봉산출시의 기본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이 확정된 년도의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이사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단은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이사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퇴임한 이사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장이 그 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14 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이사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보수는 이사장이 재임 시 지급 받은 기본 연봉, 부가급여(직책수행비 및 가족수당)와 성과급을 합한 금액을 재임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해서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15 조(복리후생 등) ① 공단은 이사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이사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공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6 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마포구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이사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 18 조(권리의 귀속)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19 조(세금)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 한다.

제 20 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계약기간) ① 제3조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초 임명일부터 임기 3년으로 정한 것이며,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의 이사장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사장 임기의 개시일과는 무관하다.

제 2 조(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실시시기) 제8조에 의한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는 2007년도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부터 실시한다.

제 3 조(인센티브성과급 등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이사장 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은 2007년도 사장평가,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및 공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연봉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이사장 성과연봉(인센티브성과급), 연임보장 및 해임은 2007년도 경영성과 평가가 실시되는 2008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도 이사장 연봉은 종전에 체결한 2008년도 연봉계약서에 의한다.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 함.

2008년 3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
구청장 신영섭 (인)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 (인)

- 별 표
1. 기본연봉
 2. 경영목표
 3. 경영목표 평가기준
 4.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5. 연임보장 사유
 6. 임기중 해임사유
 7. 연봉 조정표
 - 8 성과금 지급율

별표 1. 기본연봉

기 체결한 2008년도 연봉계약에 의한다.

별표 2. 경영목표

중점 과제	경영목표	세부 추진사항
① 공공서비스 제공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1)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2)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실시 (3) 민원발생 최소화 및 적극적 문제해결
② 고객만족 증진	○ 고객만족도 향상노력	(1) 고객감동 실현을 통해 이용자만족 증대
	○ 고객지원시스템 확립노력	1) 고객응대 접점에서의 질높은 서비스 제공 (2) 고객위주의 편리한 이용시설 확립
③ 사업운영 확대	○ 사업운영 활성화 실적	(1) 활기찬 시장 조성을 통해 이용고객 증대 (2) 전년대비 사업별 수입증대방안 개발 노력
④ 경영수지 개선	○ 사업수지 향상 노력	(1) 연간 수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실적관리 (2) 생산성 증대 및 경상경비 절감
	○ 예산절감 노력 및 실적	(1) 고효율, 저비용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별표 3. 경영목표 평가기준표

중점 과제	경 영 목 표	목표치	기준치	평가기준	비고	배점
계						100
① 공공서비스 제공 (25점)	○ 차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점)	10건	6건	· 공공서비스 제공건수 (무료행사, 지역사회 공헌 등)	공통 목표	10
		200 시간	100 시간	· 사회봉사활동 실적		8
		5%	1%	· 민원발생 감소율		7
② 고객 만족 증진 (50점)	○ 고객만족도 향상노력 (20점)	7점 이상	전년 대비	· 외부고객만족도 점수향상	공통 목표	20
	○ 고객지원시스템 확립노력 (30점)	7건	3건	· 이용고객 서비스기준 확립 노력 및 추진실적	자율 목표	15
		10건	6건	· 고객편의성 제공실적 및 확보노력		15
③ 사업운영 확대 (10점)	○ 사업운영 활성화 실적 (10점)	7%	3%	· 시장주차장 이용고객실적 증가율(목표대비)	자율 목표	5
		5%	1%	· 사업수입 증가율(전년대비)		5
④ 경영수지 개선 (15점)	○ 사업수지 향상 노력 (10점)	98%	90%	· 사업수입 목표달성율	자율 목표	5
		130%	122%	· 사업수지비율 목표달성율		5
	○ 예산절감 노력 및 실적 (5점)	12%	8%	· 예산 편성액 대비 절감율 (절감+불용액)		5

< 특약사항 >

중점과제 ①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② 고객만족 증진의 『고객만족도 향상노력』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전체 경영목표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 평가방법 >

① 공공서비스 제공(25점)

○ 차질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25점)

(1) 공공서비스 제공 건수(10점)

- 평가대상 : 무료행사, 지역사회 공헌실적, 업무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건수

예) 관내 무의탁노인 주거시설(전기·영선·기계) 무상점검, 독거노인 사랑의 김장담구기, 시장 고객사은대잔치, 불우이웃 성금모금, 제안제도를 통한 서비스개선 등

- 점수산정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비 고
건 수	10건 이상	9건	8건	7건	6건	기준치 6건 미만 0점

(2) 사회봉사활동 실적(8점)

- 평가대상 : 임직원의 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

- 점수산정

점 수	8점	6점	4점	2점	1점	비 고
시 간	200시간 이상	175시간	150시간	125시간	100시간	기준치 100시간 미만 0점

(3) 민원발생 감소율(7점)

- 평가대상 : 공단 홈페이지 고객마당 민원처리공개방(칭찬민원 제외)
- 점수산정

점 수	7점	6점	5점	4점	3점	비 고
감소율	5% 이상	4%	3%	2%	1%	기준치 1% 미만 0점

② 고객만족 증진(50점)

○ 고객만족도 향상노력(20점)

(1)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향상(20점)

- 평가대상 : 외부고객만족도 점수 향상(외부용역 조사점수)
- 평가기준 : 전년도 외부고객만족도 점수(51.5점)
- 점수산정

점 수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비 고
고객만족 점수	7점 이상	6점	5점	4점	3점	기준치 3점 미만 0점

○ 고객지원시스템 확립노력(30점)

(1) 이용고객 서비스기준 확립노력 및 추진실적(15점)

- 평가대상 : 고객현장 · 서비스이행기준 제정 및 정비,
고객만족 전략수립, 서비스 장애요인 대응방안 수립 등
- 점수산정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비 고
건 수	7건	6건	5건	4건	3건	기준치 3건 미만 0점

(2) 고객편의성 제공실적 및 확보노력(15점)

- 평가대상 : 고객편의시설 확충, 고객관련 인력배치,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개발 및 고객관리의 정보화 노력 등
- 점수산정 :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비 고
건 수	10건	9건	8건	7건	6건	기준치 6건 미만 0점

③ 사업운영 확대(10점)

○ 사업운영 활성화 실적(10점)

(1) 시장주차장 이용고객실적 증가율(5점)

- 평가대상 : 시장주차장 이용고객 증가율
- 평가기준 : 2007년 이용고객 차량대수 목표 → 700,000대(출차기준)
- 점수산정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증가율	7%	6%	5%	4%	3%	기준치 3% 미만 0점

(2) 사업수입 증가율(5점)

- 평가대상 : 전년대비 사업수입 목표 증가율
- ※ 예) 임대보증금, 부가세 등은 제외
- 점수산정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증가율	5%	4%	3%	2%	1%	기준치 1% 미만 0점

④ 경영수지 개선(15점)

○ 사업수지 향상노력(10점)

(1) 사업수입 목표달성율(5점)

- 평가대상 : 구청에서 목표로 승인한 수입목표 달성율
- 점수산정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달성율	98% 이상	96%	94%	92%	90%	기준치 90% 미만 0점

(2) 사업수지비율 목표달성율(5점)

- 평가방법 : 사업수입/사업비용 × 100
- 평가기준 : 2006년 경영평가시 122% 달성
- 점수산정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달성율	130% 이상	128%	126%	124%	122%	기준치 122% 미만 0점

○ 예산절감 노력 및 절감(5점)

(1) 예산편성액 대비 절감율(5점)

- 평가방법 : 해당연도 예산편성액 대비 잔액기준(결산기준, 불용액+절감액)
- 평가기준 : 2005년도, 2006년도 결산기준 참고하여 설정
- 점수산정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비 고
절감율	12%이상	11%이상	10%이상	9%이상	8%	기준치 8%

별표 4.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

점 수	목표치(95점)	90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기준치(60점)
등 급	S	A	B	C	F

별표 5. 연임보장 사유

1.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경영평가 결과 매년 평가등급이 상향된 경우로서, 임기 중 최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별표 6. 임기중 해임사유

1.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2.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
3.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2개 이상이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현저히 경영상태를 악화시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별표 7. 연봉 조정표

(1)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상 또는 삭감한다(단위 %).

가. 이사장평가에서 “가”(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10	5	3	0	0
	나	5	3	0	0	0
	다	3	0	0	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나. 이사장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5	3	0	0	0
	나	3	0	0	0	0
	다	0	0	0	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다. 이사장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0	0	0	0	0
	나	0	0	0	0	0
	다	0	0	0	0	0
	라	0	0	0	0	0
	마	0	0	0	0	0

라. 이사장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0	0	0	0	0
	나	0	0	0	0	0
	다	0	0	0	0	0
	라	0	0	0	0	-3
	마	0	0	0	-3	-5

마. 이사장평가에서 “마”(최저)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0	0	0	0	0
	나	0	0	0	0	0
	다	0	0	0	0	-3
	라	0	0	0	0	-5
	마	0	0	-3	-5	-10

(2) 임기 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이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0% 인상한다.
2.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0% 인상한다.
3.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이상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0% 삭감한다.
4. 이사장평가·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전년 대비 3단계 이상 평가등급이 하락된 경우에는 10% 삭감한다.

별표 8. 성과급 지급율(단위 : %)

(1) 사업년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이사장평가에서 “가”(최고)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750	500~700	450~500	450	0
	나	500~700	450~500	450	450	0
	다	450~500	450	450	450	0
	라	450	450	450	450	0
	마	0	0	0	0	0

나. 이사장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450	400~425	385	385	0
	나	400~425	385	385	385	0
	다	385	385	385	250~300	0
	라	385	385	250~300	285	0
	마	0	0	0	0	0

다. 이사장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 과	가	385	320	320	320	0
	나	320	320	320	320	0
	다	320	320	320	280	0
	라	320	320	250	220	0
	마	0	0	0	0	0

라. 이사장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320	260	260	260	0
	나	260	260	260	260	0
	다	260	260	260	260	0
	라	260	260	260	160	0
	마	0	0	0	0	0

마. 이사장평가에서 “마”(최저)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		이행실적평가 결과				
		S	A	B	C	F
경영평가 결과	가	150	150	150	150	0
	나	150	150	100	100	0
	다	150	100	100	80	0
	라	150	100	80	50	0
	마	0	0	0	0	0

(2) 임기중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이사장평가·경영평가 결과 1개 이상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750%를 지급한다.
2.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500% 를 지급한다.

(3) 지방공기업 경영대상(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경우 500%를 지급한다.